2021년도 제28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Ⅰ. 회의 개요

o 일　　시: 2021. 10. 20.(수요일), 10:30

o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o 참 석 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강태욱, 김경숙, 노정동, 박성호 위원

o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277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분과위원

3. 안건상정 ·····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강나래 전문위원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 분과위원장

Ⅱ.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922건(안건번호 제2021-143740호~144435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1-143740호~143749호(순번 1번~10번)는 블로그 및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시정권고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이 인정되어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909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o 최승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28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1-277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강나래 전문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과 관련하여 2쪽의 OSP명, 5쪽의 OSP명, 실연자명, 저작물명, 6쪽의 OSP명, 게시물명, 게시일자, 후원금액, 7쪽의 게시물명, 게시물 내용, 8쪽의 후원금액, 게시판명, 게시물명, 9쪽의 게시일자, OSP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C 위원: 제1호 안건의 해당 부분은 민원인 신고 건으로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함.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A, D, E, B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강나래 전문위원: 제2호 안건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 OSP명, 실연자명, 후원금액, 게시물명, 게시물 내용, 게시판명, 게시일자 등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회의 부분인 14쪽~18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함.

3. 안건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강나래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39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922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10번은 2명의 민원인이 실명으로 신고한 건임. 블로그 및 웹하드 사이트에서 다수

의 영화 및 만화 불법복제물을 각 제공 중인 사안임. 총 13개 게시물임.

(순번 3번 심의대상 게시물을 재생하여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의 전체 분량인 약 119분을 스트리밍으로 제공 중에 있음. 티빙, 웨이브, 왓챠 등 OTT 서비스에서 유료 회원 가입 후 시청 가능하며, 네이버 시리즈 온에서 구매 가능함.

('■■ ■■' 게시판의 '■■■ ■■■ ■■■■' 게시물을 보여 주면서)"이 게시물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요청으로 비공개 조치 되었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심의위원회에 의해 시정 조치된 게시물임.

(순번 10번 채증 자료를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의 2권을 30 포인트에 판매 중이며, 네이버 시리즈에서 한 화당 300원에 대여, 500원에 소장 가능함.

불법복제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 점,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건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건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A 위원: 해당 블로그에 광고 배너가 게시되어 있는지?

- 강나래 전문위원: ('■■■■' 게시판을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광

고 배너는 없음. 다만 최근까지 다수의 불법복제물을 계속적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A 위원: 시정권고의 요건이 충족하였으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 B, C, D, E 위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10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11번~680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892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만화, SW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방송 '더 보이즈'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6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방송 '더 보이즈'를 1,29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시즌1 1화~8화 전체 분량인 약 60분을 mkv 파일로 제공함. Amazon Prime Video 채널에서 2019. 7. 26.에 공개된 히어로 방송물이며, 시즌2는 2020. 9. 4.에 총 8화 방영되었음.
(SW 'Vegas Pro 16'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27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SW 'Vegas Pro 16'을 무료로 제공 중인 사안임. 저작권사는 'MAGIX.'이며, 전문가를 위한 비디오 및 오디오 편집 소프

트웨어임. 권리자 홈페이지에서 무료 체험용 프로그램을 제공이며, 라이선스 이용료는 1개월에 약 23,700원임.

(영화 '베놈 2: 렛 데어 비 카니지'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495번은 모바일 웹하드에서 영화 '베놈 2: 렛 데어 비 카니지'를 무료로 제공 중인 사안임. 영화 전체 분량인 약 83분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임. 2021. 10. 13.에 개봉한 해외 영화이며, 현재 극장 상영 중으로, 2021. 10. 19. 기준 박스오피스 1위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681번~696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임. 영화 '■■■■'가 VOD 출시와 동시에 불법복제물이 빠르게 유통되고 있어 이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긴급심의를 요청함. 심의일 기준 오전 9시까지 심의 요청된 총 17개 게시물을 추가하여 보고 드리겠음.

(순번 681번 채증 자료를 제시하면서)웹하드 사이트에서 해당 저작물을 186 포인트에 판매하고 있으며, 영화 전체 분량을 mkv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순번 696번 채증 자료를 제시하면서)웹하드 사이트에서 해당 저작물을 230 포인트에 판매하고 있으며, 영화 전체 분량을 mp4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순번 11번~696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1번~696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안건번호 제2021-143740호~144435호(순번 1번~696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2021년 제289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10. 27.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강태욱

위원 김경숙

위원 노정동

위원 박성호